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05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9.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6. 1. 9.	
다. 상정·보류일자:	2026. 1. 21.	산업경제위원회 상정·보류
라. 상정·일자:	2026. 3. 25.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마. 의결일자:	2026. 3. 26.	산업경제위원회 찬성의견

2. 제안설명의 요지(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가. 제안이유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시행기간 만료(2025. 12. 31.)와 특화사업자의 불일치에 따라 특구계획을 정비하고, 해양·에너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 특화사업을 확대·조정함으로써 특구 운영의 지속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안) 내용

1) 특화사업자의 시행기간 변경

- 기존: 2007년 ~ 2025년
- 변경: 2007년 ~ 2028년(3년 연장)

2) 특화사업자 명칭 및 주소 변경

지구명	특화사업자		비고
	기정	변경	
내산지구	삼강엠엔티(주) (동해면 내산3길 51-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좌동)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 (동해면 용정6길 51-6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동해면 내산3길 51-1)	
장좌지구	삼강에스앤씨(주)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삼강에스앤씨(주) (좌동)	대표자 변경: 송무석→이승철

3)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

지구명	세부사업		비고
	당초 (3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변경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내산지구	①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① 조선기자재 생산 ②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조선기자재 생산 (완료사업) 포함
양촌·용정지구	②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③ 선박개조·수리 ④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③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④ 선박개조·수리 ⑤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장좌지구	⑤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⑥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⑦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⑧ 선박개조·수리	기존완료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재편

다. 의견청취

- 2025. 12. 3.: 특구계획변경 신청서 제안(특화사업자→고성군)
- 2025. 12. 12.~2026. 1. 2.: 특구계획변경(안) 공고
- 2025. 12. 19.~2026. 1. 2.: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 2025. 12. 30.: 공청회 개최 공고
- 2026. 1. 16.: 공청회 개최
- 2026. 1. 중: 군의회 의견청취

라. 근거법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호철)

가. 주요 특구계획(변경)(안) 내용

1) 특화사업자의 시행기간 변경

- 기존: 2007년 ~ 2025년, - 변경: 2007년 ~ 2028년(3년 연장)

2) 특화사업자 명칭 및 주소 변경

지구명	기존 특화사업자	변경 특화사업자	비고
내산지구	삼강엠엔티(주) (동해면 내산3길 51-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좌동)	명칭변경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 (동해면 용정6길 51-6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동해면 내산3길 51-1)	명칭 및 주소변경
장좌지구	삼강에스앤씨(주)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삼강에스앤씨(주) (좌동)	대표자 변경 송무석→이승철

3)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

지구명	세부사업		비고
	당초 (3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변경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내산지구	①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① 조선기자재 생산 ②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조선기자재 생산 (완료사업) 포함
양촌·용정 지구	②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③ 선박개조·수리 ④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③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④ 선박개조·수리 ⑤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장좌지구	⑤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⑥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⑦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⑧ 선박개조·수리	기존완료사업 등 을 세부사업으로 재편

나. 검토의견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특구계획을 정비하고 해양·에너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구사업 내용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특히, 특구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점과 특화사업 세부내용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세분화하여 산업 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 특화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정비 등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 등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계획 변경이 단순한 형식적 정비나 기간 연장에 그칠 경우 특구 지정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연장된 기간동안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이행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 지역업체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관리·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특화사업 확대에 따라 환경영향, 주민 수용성,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3. 26. 찬성의견

◎ 부대의견

-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 지역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 환경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